

2004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견

의안 번호	1075
----------	------

제안일 : 2004. 12. .
제안자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감사기간 : 2004.11.26 ~ 12. 2(7일간)
- 감사대상기관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19개동),
- 감사반의편성 : 심재환 의원 외 7인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동사무소 감사장
- 주요감사실시내용
 - 소관별 주요시책 및 예산집행 현황(기간:2003년도 및 2004.10월까지)
 - 각종 민원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 2004년도 10월까지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각종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 업무추진, 부동산중개업의 지도감독사항
 -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조합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 시민아파트 관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업무 추진사항 및 옥외광고 관리사항
 -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장 등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 건축허가·착공 및 준공검사 등 건축행정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 보상업무 추진사항과 가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 도로 및 하수사업과 수해,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 공원녹지대 조성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동사무소 건축관련 민원처리 및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감사실시경과
 - 시정·처리 요구사항 : 29건
 - 건의사항 : 40건
 - 우수사례 : 6건

3. 보고서 : 별첨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004. 12. .

수 신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제 목 : 2004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발의합니다.

첨부 : 2004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2004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 監査의 目的

- 구 행정사무 중 재무건설위원회에 소관 부서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써, 구정운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2004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건의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기 위함임

2. 監査期間 : 2004.11.26 ~ 12. 2(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19개동)

4. 監査實施經過

○ 감사반의 구성

- 위 원 장 : 심 재 환
- 부위원장 : 서 순 보
- 감사위원 : 이종환, 유찬중, 김복동, 박종식, 김정대, 나승혁

○ 감사 보조직원

- 전문위원 : 김 충 식
- 직 원 : 7급 김 경 량, 8급 홍 정 아
- 속 기 사 : 별정7급 서 은 미, 별정8급 유 연 숙

○ 감사장소 :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실, 동사무소 감사장

5. 監査日程 및 場所

감 사 일 시	감시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2004.11.26(금) 10:00	각 동사무소	각 동사무소	19개동 전동 (1일간 실시)
2004.11.27(토) 10:00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 사항 관련회의 등
2004.11.29(월) 10:00	재 무 국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2004.11.30(화) 10:00	도 시 관 리 국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2004.12. 1(수) 10:00	전 설 교 통 국	재무건설위원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재무건설전부서)
2004.12. 2(목) 13:00			현안사항 관련 회의 및 현장 조사

6. 現地確認班 編成

반별	동 명	의 원 명	비 고
1	청 운 동, 효 자 동, 무악 동	홍 기 서, 서 순 보	
2	부 암 동, 평 창 동	조 기 태, 김 복 동	
3	삼 청 동, 가 회 동, 교 남 동	이 재 광, 박 종 식	
4	사 직 동, 종로1,4가동	김 이 환, 심 재 환	
5	종로5,6가동, 이 화 동	김 성 배, 김 정 대	
6	명륜 3가동, 혜 화 동	남 재 경, 유 찬 종	
7	창신 2 동, 창신 3 동, 송인 1 동	오 필 근, 나 승 혁	
8	창신 1 동, 송인 2 동	오 금 남, 이 종 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목록

【재 무 과】

1.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일반공사, 전문공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
2.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공사, 구매현황
 - 주소, 업체명, 공사명, 실적(금액)
3. 2004.1~10.31 무단점유 구유재산에대한 변상금 부과·징수 내역
 - 필지, 면적, 전수, 부과액, 징수액, 점유기간 등
4. 2004. 1~10. 31 미등기 구유재산 등기 촉탁 내역
 - 필지, 면적, 전수, 등기촉탁일
5. 2004.10.31 기준 최근 3년간 과년도 체납변상금 관리 내역
 - 징수, 채권확보, 결손처분 전수 및 금액
6.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조치내역
 - 부서별, 유형별 조치사항
7. 2004.10.31 기준 최근 3년간 구 금고 약정 자금운영 내역
 - 회계별, 종류별, 원금 대비 이자수입, 이자율 등 기재
8. 연간단가계약업체현황 및 사업실적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9. 각부서별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현황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전자입찰, 수의계약, 일반계약 등
 - 년도별 계약현황 총괄표(공사,물품,용역-전수, 계약금액 등)
 - 관리대장, 시공업체 및 용역업체현황, 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서, 준공 및 발주 내역, 입찰관련서류,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계약관련 각종 보고서, 지출결의서, 기타자료
10. (국·시·구) 공유재산 보유현황(2004. 10. 31현재)
11. 일반공사, 전문공사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사업별 증감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12.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기부채납 재산중 임대외의 경우 사용자 내역
 - 관내, 관외거주자 구분작성(무상 기부채납자는 제외)

13. 구유, 시유, 국유재산 취득, 매각 및 대부실적
(매수자, 대부자, 대부료, 공시지가, 감정평가액, 국·시·구수입 등)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4. 2004년도 공사계약 예정가 및 낙찰가 현황(1억원이상)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공사명, 낙찰자명, 소재지, 예정가, 낙찰가 등 구체적으로 작성
15. 수의계약 공사, 구매현황(주소, 업체명, 공사명, 실적(금액))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6. 각부서별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련(폐합성, 생활등)처리용역비 현황
- 용역계약서, 입찰 및 수의계약서, 설계(산출) 내역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17.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시비, 구비 등)

【세무1과】

18.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증가율 변동 추이
19.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과오납발생 및 환부, 미환부현황
- 착오부과, 이중납부, 착오신고납부, 미환부세액에 대한 홍보 및 안내 실적, 기타
20.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결과 내역
- 2004.1~10.31 목표 대비 실적, 조치사항
21. 2004. 10. 31 법인 세무조사결과 내역
- 총법인수, 서면신고수, 직접조사수, 조치사항(부과금액 등)
22. 2004. 10. 31 세외수입 징수 내역(현년도, 과년도 구분 작성)
- 2003년도 대비 구 수입징수 목표액, 징수액, 미수납액
23.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운영 실적
24.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비과세현황 및 조사현황
- 조사후 조치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25. 2004. 10. 31 현재 구세 세목별(과년도수입 포함) 세입징수 내역
(2003년도 대비 구분 작성.세입목표, 징수액, 미수액, 단위 : 백만원)
26. 2004. 1~10. 31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내역
(법인, 개인별 구분 작성. 건수, 부과액, 징수액)
27.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감액처리에 대한 사유 및 현황
- 세목별 구체적으로 작성
28.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구세 납세자 상위 100인(세목별)

29. 관내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입변화 현황

【세무2과】

30.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각종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현황

31. 지방세 미납자(체납자)에 대한 재산공매처분실적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32.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및 시효결손처분실적

- 세목별 금액, 결손처분사유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세, 세외수입, 주차장

- 타 자치구 별도

33. 지방세 체납자 상위 100인(세목별)

34.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 체납징수 실적

- 구세, 시세구분, 현년도, 과년도구분, 건수, 체납액, 징수액,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35. 2004. 1~10. 31 결손처분 내역

- 세목별, 건수, 금액, 체납자

36.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 지급 내역

- 재부과 건수, 행정심판 및 소송 내역 포함 기재(시,구세)

- 납세자, 물건지, 부과시기, 징수시기, 사유, 환불결정액(본세+이자),

과오납통지일, 과오납지급일 등

【지적과】

37.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필지 불부합지현황 및 해소대책

38.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

- 대상업소, 위반업소, 위반 유형별 조치내역

39.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지가결정·공시내역

새주소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추진계획

【주택과】

40.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생계형이 아닌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 및 대집행현황

- 증축, 신축, 대수선에 가까운 33㎡ 이상

41.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 및 이행

강제금부과내역, 양성화방안

- 동별 항목 포함, 건수,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42.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저소득층 전·월세 용자금 지원현황

43.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과다 징수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내역 및 반환내역

44. 재건축추진 현황(현재까지 지정완료 및 향후 추진할 지역 포함)

- 2004. 10. 31 현재

45. 2004. 1. ~10. 31 현재 주택민원 인·허가 관련하여 반려처리된 내역

- 반려사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46. 2004. 10. 31 현재까지 주거환경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도시계획과】

47.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재개발 공람공고결과 주민의 의견서 내역

- 사업별 구체적으로 작성(의견서에 대한 반영여부 명시)

4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매수청구건수,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시설결정, 집행완료, 미집행현황 등

49.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 및 불법 현수막(게시물)의 단속실적,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50. 2004. 10. 31 현재 교남 뉴타운지구 개발 추진 현황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51. 2004. 1~10. 31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실적

- 개소,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내역

52. 2004. 1~10. 31 종로 UP-Grade 광고물 정비 실적

- 점포수, 간판수 목표 대비 실적

53. 동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허가취소, 반려(사유명시)현황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54. 2004. 10. 31 현재 재개발구역시정 및 추진현황, 신청현황 및 향후대책

55. 2004. 10. 31 현재 도시기본계획(풍치지구) 해제조치, 완화포함 처리현황

56. 2004. 10.31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건축과】

57.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낮은 높이의 보도를 향한 에어컨

실외기 단속실적, 향후대책

58.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효자동, 청운동 신축건물현황
-다세대, 다가구 구분 작성
59.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각 동별 5층이상 신축건물현황 및
가건축물 승인건수
60. 동별 장기미준공건물현황 및 과태료부과내역, 가사용현황, 향후 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61. 동별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징수실적 및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62.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완공된 건물중 예산으로 보수한 내역
- 건별 공사내역, 보수금액, 예산제약일, 하자보증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 건물별 준공과 동시 하자관리 내역서 사본, 하자보증기간 만료시 종합하자관리
내역서 사본
63.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건축허가후 허가취소,고발,과태료 부과실적
64. 2004. 1~10. 31 건축만원 인·허가 관련하여 반려처리 된 내역
- 반려이유, 근거, 제출일자, 반려일자, 처리기간, 회신공문 사본
65. 2004. 1~10. 31 위법건축물 관리 현황
- 점검일시, 점검결과 조치, 점검자
66. 2004. 10. 31 현재 위험시설물관리현황
- 종류별, 개소, 점검결과조치 내역
67.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동별 건축 인·허가건수 및 사용승인현황

【공원녹지과】

68.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공원안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내역
- 편의시설별 구체적으로 명시
69. 가로수 가지치기(전지 예산집행내역 및 살충재 사용량, 가로수
하자보식현황
- 2003년도 대비 구간, 그루, 일자, 업체명, 집행액
70.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소공원 현황 및 시설시공시 소요예산내역
71. 공원관리 일용직 인원현황 및 명단(2004. 10. 31현재)
72. 주택가 임야 및 도로변 위험수목제거실적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73. 2004. 1~10. 31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예산집행 내역
 - 시설명, 일자, 시공자, 집행액
- 74. 2003. 10. 31~2004. 10. 31 매수청구 공원용지 보상집행 내역
- 75. 2004. 10. 31 현재 인왕산(청운지구)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예산집행 내역 (일자, 시공자, 집행액)
- 76. 학교 공원화사업 추진 예산집행 내역
 - 상명대부속초교, 세검정초교, 일자, 시설명, 시공자, 집행액
- 77. 2004. 1~10. 31 종묘시민광장 정비사업 예산집행 내역
 - 일자, 시공자, 집행액
- 78. 2004.1~10.31 종묘뒤 주거취약지역 녹지조성사업 추진 현황
- 79.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녹지시설 유지보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80.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그린벨트 불법훼손내역 및 단속현황
- 81.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구기동 유실수단지 관리내역

【건설관리과】

- 82.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변 도로상에 설치된 불법 오락기 단속실적
- 83. 무허가 사설 안내 표지판에 대한 단속실적 및 변상금 부과실적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유형별 구체적으로 명시
- 84.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징수실적 및 체납자에 대한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85. 도로점용 건수 및 부과금액, 면적의 과다(신고,허가면적보다 과다 점용) 및 불법점용에 대한 조치내역(보도 포함)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86. 가로판매점 허가조건 위반자에대한 조치내역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87. 신발생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현황 및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금액, 향후대책
 - 개소, 단속 연인원, 수거물량중 반환불량 및 폐기치분 물량 기재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88. 2004. 1~10. 31 공공용지관리실태 전수조사 및 조치 내역
 - 도로, 구거, 하천 별로 작성
- 89. 공공용지 점용료, 변상금 징수 내역(하천점용료 포함)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 대비 징수액
- 90. 2004. 1~10. 31 공익사업수행에 따른 보상금 집행내역
 - 보상관련 소송진행 사항 별도 기재

【토 목 과】

91. 하수도개량 현황 및 도로포장(아스콘덧씌우기) 현황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공사명, 길이, 면적,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92. 2004년도 2억이상 공사시 설계변경 내역(공사내역, 업자, 소요예산, 설계용역 업자, 과업지시서, 지질조사, 설계변경 내역, 누가 요구 했는가?)
 1. 상명대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2. 무악동 45-83~45-20간 도로정비공사
 3. 평창동 296-1296-2호간 하수관 정비공사
 4. 종로3.4가 하수관 정비공사
 5. 동송동 129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
 6. 왕산로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7. 송인 210번지 일대 수해하구 대책사업
 8. 대학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9. 동송동 1번지의 1개소 도로정비공사
93.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동별 소규모사업 집행내역
 - 사업명, 업체명, 위치, 길이,면적,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94. 보도육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집행내역 및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용역업체명, 육교명, 진단결과 및 조치내역 등 구체적으로 작성
95.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각동 소규모편익사업 집행내역
 - 공사명, 길이, 면적, 소요예산 등 구체적으로 작성
96.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우리구 관내 육교현황 및 연도별 보수비 집행내역
 - 육교명, 위치, 보수내역, 보수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97.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동별 도로굴착 인·허가 및 도로복구비 징수현황
98.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동별 제설장비 및 자재지급내역 및 재고현황
99.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동별 사도현황 및 사도에 대한 도로보수 공사대책

【교통행정과】

- 100. 2004. 1~10. 31 'Green Parking 2006' 사업추진실적
 - 일자, 추진내용, 시공자, 용역비 포함 예산집행액
- 101. 공영주차장 건립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일자, 위치, 구조, 면적, 설치면수, 시공자, 예산집행액
- 10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내역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 대비 징수액
- 103.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 구성위원수-임명직, 위촉직, 회의참석수, 회의개회 횟수, 회의수당 지급액
- 104. 2004. 1~10. 31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실적
 - 일자, 사업명, 사업물량, 시공자, 예산집행액
- 105. 2004. 1~10. 31 현재 주차시설물 정비 실적
 - 일자, 사업명, 사업물량, 시공자, 예산집행액
- 106.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교통영향평가실적
 - 사업별 구체적으로 작성
- 107. 미끄럼방지턱 신설, 재포장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08.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제작현황(업체, 내용별)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09. 서인사마당주차장 추진경위 및 건립계획(당초, 변경내용포함), 예산집행 내역, 민원처리현황, 향후추진계획

【교통지도과】

- 110.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실적
 - 2004. 1~10. 31 위치, 대수, 일자, 시공자, 예산집행액
- 111.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실적
 - 2004.1~10.31 신청가구, 면수, 예산지원액
- 112.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 대비 징수액
- 113. 버스 전용차로 위반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실적 및 불합리하게 지정된 구간의 시정내역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단속 연인원, 장비 기재

- 시정내역이 있을시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 114. 외국 공관 소유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15. 이면도로에 버스 및 대형트럭의 불법 장기주차(밤샘주차) 단속실적,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16.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내 무단주차 전인실적 및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17.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내역, 체납내역, 향후대책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 118.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주차장관리 위탁 내역
 - 위탁업무명, 계약방법, 입찰업체명, 입찰금액, 운영실적
- 119. 각 동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운영실적
 -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연도별 목표대비 징수액)
- 120.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동별 건축물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현황 및 과태료부과실적, 향후대책(기계식 주차장 별도 작성)
- 121. 2004. 10. 31 기준 최근 3년간 무단방치 차량단속 및 처리현황

8. 監査意見 및 處理意見

가. 主要 是正要求事項

【재무국】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 내용중 오자, 탈자, 숫자 및 단위 미표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 일반공사 및 전문공사별 실재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비용의 증감이 되고, 이 또한 부실공사 및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방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재무과)
- 2002~2004년도 각부서별 수의계약 318건중 ○○기업이 33건에 약 10%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사항은 없는지를 검토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재무과)
- 국·공유지 및 구유지 매각시 공시지가보다 조금높게 평가되어 현실 가격보다는 낮게 매각되고 있음. 이는 우리구 재정 형편에 한푼이라도 재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지역에 투자하여야 되는 실정을 감안 앞으로는 국·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시에 매각 예상금액을 심의위원회에 미리 알려주고 사전에 현장을 방문 충분한 조사를 한다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심의 내용을 숙기록으로 기록하여 하루 잘잘못을 따질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재무과)
- 각종 연구개발비 및 용역비에 있어서 관선 구청장시대보다는 민선구청장 시대에 들어와서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꼭 필요한 용역 및 연구개발비외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재무과)
- 구유재산중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불요불급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실시하여 구재정도 늘리고 불요불급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재무과)
- 과오납중 착오부과한 금액이 10,310건 15,969,233천원에 이르고 있는 것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담당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과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과세자료를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한 업무 숙지를 통하여 정확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또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과오납등 착오부과 사례가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 2과)

- 5백만원이상 고액채납자가 아직도 우리구 재정에 커다란 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채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채납자 전담팀을 서울시의 38기동대처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차제에 그 동안의 활동실적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납징수업무에 대한 전문화된 공무원들로 재구성하여 보다 채납징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과)
- 지방세를 정리함에 있어 불납결손처분과 시효결손처분 등이 26,941건 4,934,351천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 입장에서 불배 채납징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으로 현장방문을 철저히 하여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 2과)
- 2002~2004년도 지방세 채납자의 30건 194,103천원을 재산공매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우리구 빈약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채납자에 대한 제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채납징수에 철저히 기할 것(세무2과)
-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경제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기 바람(지적과)

【도시관리국】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 내용중 오자, 탈자, 숫자 및 단위 미표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 2004년도 현재 우리구에는 2,362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을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건축물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
(주택과)
- 2004년도 현재 우리구에는 에어컨실외기가 659건이 도로변에 낮게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후덥지근한 바람을 내뿜어 불편감을 주고 있어 이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잘못 시공된 실외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할 것
(건축과)
- 우리구 관내 공원 대부분 낙후된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낙후된 시설물은 조속히 정비하고, 아울러 부족한 시설물 또한 이른 시일내로 확충하여 이용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공원녹지과)
- 1997년 7월 10일 구기동3-20외 2필지 1,500평에 능금나무, 자두나무 등 600주의 유실수 단지를 조성한 후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유실수에서 열린 과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근노인정과 저소득층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동망산공원내 정자를 설치하였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03. 6. 17일 붕괴된 이후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재시공을 하여야 하겠으나, 현재 정자 재시공의 경우 동절기 공사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아울러 붕괴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공원녹지과)
- 소규모공원이나 공지, 가로변과 구기동, 사직공원 등에 느티나무 및 유실수 등을 식재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식재한 수목이 활착전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고사목의 보식이 즉각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주택가 및 도로변 위험수목제거와 가로수 전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일부 자료 내용중 오자, 탈자, 숫자 및 단위 미표기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람(전부서 공통)
- 2004년도 9월 현재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부과 12,649건, 1,942,536천원에 체납이 3,580건, 590,649천원으로 체납액이 약 33%에 달하고 있으므로 체납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징수하도록 할 것(건설관리과)
- 도로상에 상품적치로 인하여 보행자 및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교통소통원활 및 보행자 안전대책 및 위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우리구 관내 가판대가 332개소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으로 명목이 변경되었거나 허가된 장소가 아닌 장소로 무단으로 이전된 가판대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 바람, 아울러 당초 허가조건에 위반된 사례가 238건이나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이들 노점상들은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여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쓰레기를 함부로 배출하는 등 많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이 방치하다 싶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등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노점상의 무단 도로점용으로부터 시민들의 보행권을 찾아주고 이들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도로굴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연석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 토목,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동시에 공사를 함으로써 동일한 장소에 중복해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해소 및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토목과)
- 도로굴착시에는 도로법시행령 규정에도 있듯이 교통량이 적고 유동인구 이동이 뜸한 야간시간대를 활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람(토목과)
- 동절기 제설장비도 사전 점검을 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장비 작동방법도 각동 직원들에게 실시할 것이며, 또한 염화칼슘의 재고량을 살펴보면 적정량을 초과 보유하고 있으므로 소요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정 소요량을 소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당초 허가대로 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이 무단용도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통해 위반된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교통행정과)
- 서인사마당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총사업비 13,870백만원에 차량 1대당 2억 5천만원이 투입되는 것은 비효율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규모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당초에 시·구비 50%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시비 3,935백만원이 배정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본사업은 기다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을 고려해 볼 때에도 투자 우선순위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교통지도과)

나. 建議事項

【세 무 국】

- 각종 건설공사의 수의계약 입찰시 관내에도 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관내 인문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기 바람(재무과)
- 관급공사 계약의 경우 조달청의 공시되는 금액이 일반업체에서의 공사 금액보다 과다하게 공시된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이는 관급공사라고 해서 반드시 조달청의 공시되는 금액보다 낮으면서도 시공할 수 있는 일반전문업체가 많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조달청의 공시되는 금액이 현실에 맞게 공시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바람(재무과)
-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취지와 과표현실화의 정책 기준에 따라 2004년도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각각 10.33%, 4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증가율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우리구의 실정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증가율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 바람(세무1과)
- 지방세법 제109조 및 동법 제129조의2 제2항에 의거 흥남파선생 가옥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한 후 매입한 부분에 대한 대체취득으로 보아서 등록세 및 취득세를 대체취득한 금액만큼 비과세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여 비과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하기 바람(세무1과)
- 고질적인 고액채납자에 대하여는 채납정리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반업체가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질적 채납자 및 고액채납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세무1과)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현장확인이나 인근필지의 현황과 이웃간의 형평성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건축, 재개발 지구등에서는 고율의 보상을 의식한 악의적인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구 토지특성과 현황 등을 정확히 건교부에 전달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지적과)

- 관내 공유지분에 대해서 용적율과 건폐율이 관련법에 맞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게 2006.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분쟁이 다수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지적과)

【도시관리국】

- 매년 서울시의 항공촬영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 했을 경우 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에 대한 인지대의 비용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결과에 관계없이 행정청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므로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부과한 행정청으로 세외수입 일부가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기 바람(주택과)
- 저소득층에게 전·월세임차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은 2002년 187건, 2003년 211건, 2004년 74건으로 임차비율이 약1/3로 해가 거듭될수록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므로 임차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주택과)
- 종로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되어 개발되고 있으나 이는 주거를 개선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주거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2의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문제점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주택과)
- 불법건축물 및 위법건축물이 행정조치를 받고서도 시정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행위허가시 관련부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부서에 사진에 통보하여 행정조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주택과, 건축과)

-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권 확보를 위해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가구를 분리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자체 수익성이 떨어져 일부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과, 건축과)
- 동의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종전에는 통담당책임제로 단속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나 동기능전환으로 단속체계가 확립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무허가 건축행위가 휴일과 주말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어 도시관리측면이나 사후 강제이행금 부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으니 무허가건물 단속체계를 정립하기 바람, 단속이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10㎡미만의 소형평수의 생계형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현행 관련규정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주택과)
- 창신시장 재건축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장 재건축이 시행되고, 아울러 사업시행이 늦어짐으로써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주택과)
- 기존의 무허가건물의 경우 특정건축물정리를 위한 관련법이 제16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된 이후 특별법 제정이 안되고 있어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특별법이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과)
-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기반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는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외의 지역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등 우리구관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이원화되어 시행함으로써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이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부서를 일원화시킴으로써 신속한 민원해소는 물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주택과)

-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피맛골 보존대책위원회에서 매일 구청 민원실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내방민원 및 보행인, 인근상인들의 피해가 크므로 사업시행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됨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시위가 빠른 시일내로 종료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도시계획과)

- 서울시 2002년 10월 23일자 강북뉴-타운 개발계획에 종로구의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일부인 송인2동 지역 등 많은 곳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종로구의 장기발전계획이 서울시 계획에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도시계획과)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막대한 용역비를 사용한 후에 사업계획이 서울시에 상정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다수발생하였던 바, 앞으로는 실현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구의원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지역여론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도시계획과)

-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에 5년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3년에 결정된 도식계획시설들 대부분이 20년간이나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어 주요민원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바, 재정비 대상 도시계획시설들의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건의하기 바람(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 2,000㎡ 이하의 건축허가인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줌으로써 잘못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종로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0㎡ 이하 일지라도 현장확인율 한 후 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법 제23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6조의 개정을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우리구에서도 조사,검사,확인을 한 후에 사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위반건축물의 특별검사원 및 감리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병행해서 법집행의 실효성이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축과)

- 2002~2004년도 우리구 관내 장기미준공건물이 286건에 이르고 있고 이들 건물들은 건축허가이후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들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법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구제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허가후 허가대로 건축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되어 사전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건축과)
- 가설건축물의 경우 허가당시 조건대로 건축이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가설건축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상위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관계기관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 바람(건축과)
- 우리구는 수도서울의 중심이고 고궁과 문화재가 어우러진 역사적 도시이고 아울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임으로 가로수 수종도 이에 맞도록 미관이나 알레르기 유발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종을 검토하여 식재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어울리지 않는 가로수 수종이 식재된 곳이 많으므로 조사하여 교체 식재하시기 바라며 또한 효자로, 추사로 등에 일본명으로는 사쿠라라고 하는 벚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의미로 창경궁내에 식재되었던 벚나무를 모두 제거하였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구 관내 주요도로에 식재된 벚나무는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여 우리 정서에 맞는 가로수로 식재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종로구 관내 15군데의 약수터에 대하여 수질검사결과 약 300%가 부적합한 곳으로 나타났으므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심하고 이용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하여는 산행을 하는 등산객들이 음용수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기 바람(공원녹지과)
- 어린이공원이 28개소가 있지만 절대적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므로 우선 낙후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시비를 지원받아 낙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족한 놀이 공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는 곳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되겠으나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하여는 인근 점포에 우선권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도 올리고 도시미관도 고려한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노점상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노점상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법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람
(건설관리과)
- 도로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이 3,580건 5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허가 증교부 이전에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 제7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3에 의하면 과오납반환이자율 6%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고시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각동에서 새로이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개요를 사전에 동사무소와 해당 지역구의원에게 통보해서 사전에 불필요한 민원도 방지하고 효과적인 공사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토목과)
- 동기능전환 이후 토목, 하수 등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2002년 이전까지는 토목과에서 시행했으나 2002년 이후에는 전문성이 떨어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토목과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2개 내지는 3개 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토목과)
- 염화칼슘을 뿌리는 살포기가 현재 12개동만이 배치되어 있는바 앞으로 각동사무소에서 폭설시 취약지역과 고지대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동에 확대 구매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토목과)
- 우리구 각종 건설공사를 맡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나 공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특히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는 적정 공사비의 보장이 절대적 요소이므로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덩핑행위가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 방법에 획기적 전환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토목과)

- 현황도로의 포장과정에서 지목상에는 도로이나 소유권이 사유로 되어 있는 관계로 포장공사 시행 과정에 그 구간만 중단한 사례가 있는바 우리구와 같은 도시형성이 오래된 구에는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토지의 매입·기부채납, 사용승낙서정구 등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토목과)
- 대신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립한 것이 정책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지하주차장이 건립되면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적극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공영주차장이 건립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대신중고등학교앞 육교가 철거가 되면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경찰청과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우리구 관내에는 아직도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해당 지역구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동승동 5-6호외 7필지 299.4㎡에 대한 공영주차장건립이 조속히 시행되어 인근 열악한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교통행정과)
- 주택가 불법주정차,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재난발생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고 주민들의 교통흐름도 방해하고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가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주민신고제를 강화하여 주민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견인하는 것을 제도화함으로써 주택가에 불법주정차로 하게 되면 즉시 견인된다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 2004년 10월 현재 최근 3년간 주차위반과태료 부과는 412,290건에 16,904,868천원인데 체납건수가 261,112건에 10,730,384천원으로 총 63%를 차지하고, 또한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자가 작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신청시 배제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하여 과태료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교통지도과)
- 공영주차장내 CCTV를 설치하여 고의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접촉사고로 인한 분쟁해결 및 날로 늘어나는 범죄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교통지도과)

다. 우수사례

【재무국】

- 지방세 고지서를 E-mail로 편리하게 받아보고, 인터넷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지서의 송달에 따른 우송료의 절감뿐 아니라, 납세시민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 매뉴얼'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구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봄(세무1과)
- 지방세·국세 One-Stop 상담 전용회선 운영에 있어서 민원인이 전화로 우리구 세무1, 2과에 국세에 관한 사항을 문의해 오는 경우 종로세무서의 상담전용전화로 바로 연결해 주고, 세무서에서도 지방세에 관한 민원 전화를 접수할 경우 우리구 세무1.2과로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민원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좋은 제도라고 봄(세무1과)

【도시관리국】

- 2004년도 옥외광고물정비에 있어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변의 건물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인 가로, 돌출, 세로, 지주 등의 고정광고물 총 2,591건을 정비하였고, 또한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총 1,759,810건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상회,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도

8천만원의 상금을 받는등 실효성있는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왕복 2차로 이하로도 확대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기 바람(도시계획과)

- 학교운동장 주변 녹화사업인 상명대부속초등학교, 새검정초등학교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학습장 조성, 화단조성과 수목을 식재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분위기를 향상시켰으며, 또한 가로수 보호관 정비사업인 울곡로, 대학로를 대상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보호관 360조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가로수보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였고, 아울러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교육1등구를 위한 변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내 다른 학교에도 확대 실시하기 바라며, 효과적인 가로수보호사업 또한 기타 주요도로에도 확대하는 등 사업을 극대화 하기 바람(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를 함에 있어서 2004년도 노점상 899건, 노상적치물 1,899건을 단속하였고, 1,589건 1억1천6백8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변상금으로 165건, 7백8십6만원을 부과하였고, 36건을 고발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항구적인 노점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탐골공원, 종묘공원앞에는 대형목재화분을 설치하여 획기적인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을 향상시킨 점에 대하여 금년도 노점상단속 및 가로환경정비 모범구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5천만원의 상금을 받은 사업은 모범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봄, 따라서 앞으로는 이미 정비된 도로외의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여 항구적인 불법 노점상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건설관리과)
- 2004. 7. 1.부터 서울시내버스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민들의 버스이용 혼란을 줄이기 위해 캠페인, 홍보물배부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교통행정사업 관련한 평가에서 5천만원의 인센티브 상금을 받은 사업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관련된 정책적인 시책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교통행정과)